

[편그라운드진접] 청소년운영위원회 회칙

제정 2023년 3월 4일

제1조(목적) 이 회칙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하고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설치된 편그라운드 진접 청소년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회칙에서 청소년이라 함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의한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편그라운드 진접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편그라운드 진접 운영 계획의 수립 · 평가에 관한 참여와 모니터링
2. 청소년사업 및 프로그램에 관한 참여와 모니터링
3. 청소년의 권리과 인권의 신장에 관한 사항
4.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및 청소년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주체적인 책임 역할 수행
5. 회의를 통한 의견 확립 및 운영위원회 활동 홍보
6.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20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공개선발 및 추천을 통해 학교별, 성별, 연령별로 청소년이 다양하게 포함되도록 선발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④ 위원회는 원활한 조직 구성과 사업 추진 등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⑤ 위원회 운영 · 활동 등 제반 사항 지원을 위해 학계 및 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제5조(권리와 의무) 위원회는 제3조의 기능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편그라운드 진접은 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6조(위촉) ① 위원은 지역사회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 중에서 공개모집과 추천을 통해 편그라운드 진접 센터장이 위촉하고 위촉장을 수여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사임이나 해촉 사유로 인해 추가 선발된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임기로 한다.

제7조(해촉) ① 위원회 위원으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해촉할 수 있다

1. 특별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무단으로 참여하지 않았을 경우
 2. 센터 및 청소년운영위원회의 명예를 크게 손상할 경우
 3. 위원 본인이 탈퇴 의사를 전달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재지변
2. 학교시험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시험
3. 본인 질병(전염성이 있는 감염병)과 사고(프로그램 당일 사고, 입원 등)
4.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2촌 이내)의 상(喪) 및 결혼
5. 위원장과 담당 청소년지도사가 인정하는 개인 사유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은 편그라운드 진접 운영 계획의 수립, 평가에 관해 참여하여 서명 날인한다.
-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개최) ① 정기회의는 매월 1회 개최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편그라운드 진접 센터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후 그 결과를 7일 내에 편그라운드 진접 센터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견수렴 및 반영)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 제안,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 편그라운드 진접 센터장은 그 처리 결과를 회신 및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보상) 위원 중 활동실적이 우수하거나 지역사회의 명예를 드높인 자에 대하여는 표창을 수여하거나, 대외적인 수상 자격을 적극적으로 부여한다.

제12조(운영회칙의 변경)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발의로 운영회칙안을 발의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운영회칙을 변경할 수 있다.
- ③ 변경된 운영회칙은 편그라운드 진접 센터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회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편그라운드 진접 센터장의 승인을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

2023년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 회칙으로 제정합니다.

2023. 3. 4.

센터장	김호진	기자명)
위원장	이라밀	(제작인)
부위원장	정유철	(제작인)
위원	길가은	(촬영인)
위원	김수아	(촬영)
위원	김정음	(촬영)
위원	백선우	(촬영)
위원	소리아	(작성인)
위원	전유나	(촬영)
위원	조태상	(촬영)
위원	이어비는	(제작인)
위원	김세진	(제작인)
위원	박지민	(제작인)
위원	이가영	(제작인)